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 등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를 추가함(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).
-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22조의2).

개정안		내 용
제10조의2 제2항	제7호	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환자(18세 이하의 환자)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를 추가함.
제22조의2	제1항	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소방청장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응급환자의 신원, 상태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	제2항	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환자 등 이송, 재외국민 등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와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는 ‘18세 이하의 환자’를 ‘소아환자’라고 표현하고 있으나,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의 경우 ‘소아청소년과’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제2호 등 참조),¹⁾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‘소아·청소년환자’로 수정

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(생략)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 7. <u>소아환자</u> (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)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③ ~ ⑤ (생략)	제10조의2(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_____ -----. 1. ~ 6. (개정안과 같음) 7. <u>소아·청소년환자</u> (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)에 대한 상담·안내·지도 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

- 안 제22조의2는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의교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,
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소방청장의 정보제공요청은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) ① 소	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) ① -

1) 「의료법」 제3조의3(종합병원)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 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
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<u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</u>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<u>의료기관</u>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	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<u>해당 의료기관의 장</u> _____ _____ _____. _____ <u>의료기관의 장</u> _____ _____.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
--	---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성완)